

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20] <개정 2018. 3. 30.>

허가·등록 수수료(제82조제3항 관련)

1.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수수료는 신규허가의 경우 40,000원, 변경허가의 경우 15,000원으로 한다.
2. 삭제 <2011.3.31>
3.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수수료는 신규등록의 경우 25,000원, 변경등록의 경우 15,000원으로 한다.